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78

발의연월일 : 2022. 11. 9.

발 의 자: 박홍근・이정문・조승래

정일영 · 김윤덕 · 김원이

오영환 • 진성준 • 기동민

윤영덕 의원(10인)

제안이유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와 금리 상승으로 개인 대출의 연체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 갚기가 힘들어 연체에 이르렀는데 일부만 연체하더라도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가산이자를 물어야 해서 채무자의 추심고통만 키우고 상환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면서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하는 현행 이자부과방식은 추심 강도와 상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켜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상황임.이에 대출금 일부를 연체하면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하여 부당한 연체부담 증대를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리·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함(제19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6조제1항제4호의2)
- 나. 대출성 상품에 관해 일부 상환을 지체한 경우 지체된 부분에 한해 서만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용을 정 하고 있는 계약 조항은 무효로 함(제45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라목5)를 7)로 하고, 같은 목에 5) 및 6)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5)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및 그 밖의 불이익
- 6) 분할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일부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 부담 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

제2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5조의2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대출성 상품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제한) ① 금융상품판매업 자는 금융소비자와 분할 상환 약정이 있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금융소비자가 대출금의 일부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전체 대출금 중 상환이 지체된 부분에 한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가 대출금 상환을 지체함에 따라 해당 대출금채권을 관리하거나 회수하는 과

정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체결한 대출성 상품의 계약 내용 중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비용 청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성 상품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	제19조(설명의무) ①
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	
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	
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	
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	
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	
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	
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1
사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대출성 상품	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
	였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
	해금 및 그 밖의 불이익
<u><신 설></u>	6) 분할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일부 상환을 지체하

5) (생략)

2. ~ 4. (생략)

② ~ ④ (생 략)

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금융 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는 금 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 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 4. (생략) <신 설>

5. (생략) ② · ③ (생 략) <신 설>

였	을	때	부담	하여) <u></u>	하듺	를
지	연선	-해	금에	관한	사	항	
<u>7)</u>	(현	행	5)와	같음)		

- 2. ~ 4.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45조의2에 따른 지연손 해금에 관한 사항
- 5.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대출성 상품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제한) ① 금융상 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와 분 할 상환 약정이 있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 후 금융소비자가 대출금의 일 부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전 체 대출금 중 상환이 지체된 부분에 한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상 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가 대 출금 상환을 지체함에 따라 해 당 대출금채권을 관리하거나 회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 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③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 업자와 체결한 대출성 상품의 계약 내용 중 제1항을 위반하 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비용 청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